

정신건강전문요원 실무경력 및 유사과목 인정 심사기준

①-1 정신건강전문요원 실무경력 인정 사항

1. 목적

- 정신건강전문요원 실무경력 인정 사항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1(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기준)에 따라 1급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심사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실무경력 인정 요건)

- 2급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인정에 대한 사항

3.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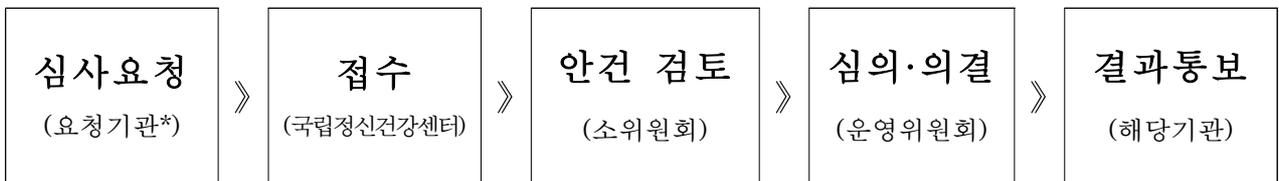
- 가. “2급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란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자격증 하단에 있는 취득일로부터 경력 기산점을 말한다.
- 나.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은 보건복지부와 정신건강전문요원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참고1의 기관(사업)을 말하며, 운영위원회 결정을 통해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다.
- 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정의) 제2호에 따라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라.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란 정규직,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경력증명서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개인별 1일 통상 근로시간으로 계산한다. 다만 질병, 육아 등 휴직 기간은 제외한다.

4. 심사사항

가. “참고1. 정신건강전문요원 경력인정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69호 제14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 운영위원회 심의 후 결정한다.

나. 심사절차



* (요청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증진 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 관련 학·협회 등

다. 심사기준

- 1)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1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 해당여부
- 2) 정신건강전문요원 인력기준 해당여부

라. 제출서류

- 1) 실무경력 인정을 위한 경력인정기관 심사요청 공문
- 2) 정신건강 사업계획서(관련 법령, 주요사업, 인력기준 필수 포함)
- 3) 기타 정신건강증진사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참고1 정신건강전문요원 경력인정기관

○ (검토사항) 기존 경력인정기관에 대해 관련법령 및 사업을 파악하여, 유지·명칭변경·제외 등 재검토함.

* 정신건강작업치료사는 해당기관의 관련법령, 주요사업, 인력기준에 부합하면 기존 경력인정기관에 포함 가능

(’22.5.31.기준)

구분	기관명(사업명)	관련법령	정신건강 주요사업	인력기준	관련부처	검토사항
1	정신건강증진시설 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정의)제4호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0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보건복지부	유지
2	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건강복지법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등) 	정신건강사업, 자살예방사업, 치매 관련사업 등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보건복지부	유지
3	트라우마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재난관리 주관기관), 제 73조의 2(재난 피해자에 대한 상담활동 지원)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심리지원)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유지
4	중앙 및 각 시·도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건강복지법 제12조(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등)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 증진사업등”)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보건복지부	유지
5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자살예방 상담·교육)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자살예방 상담·교육실시기관) <p>※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에서 수행할 기관을 공모하여 선정함.(민간경상보조금 3년사업)</p>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의 정서적 안정을 촉진하고, 필요한 치료·상담 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자살 재시도 및 자살 예방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보건복지부	유지
6	법무부 스마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조(국가의 책무), 제7조(손실복구지원)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조~9조 <p>※ 법무부에서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등 민간법인에 위탁 운영</p>	범죄피해자 대상 상담, 심리치유프로그램 실시 및 임시 거처 제공 등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	(심리지원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사례지원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법무부	유지

7	치매안심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7조(치매상담센터의 설치)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치매상담센터의 인력 기준 등) 	치매가 걱정되는 어르신과 지역주민을 위해 치매상담, 예방, 조기진단 등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보건복지부	유지
8	경찰 마음동행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의료 지원) 	경찰관, 검시관, 의무경찰 대상, 각종 심리상담 및 심리 검사 평가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예방 및 치료 지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경찰청	유지
9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보건법 제11조의4(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심리상담서비스 및 집단 프로그램 운영, 의사상담, 의료비 지원, 대상자 의뢰 및 연계 운영지침 및 평가지표 개발 및 보급, 인식개선 및 홍보활동 등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보건복지부	유지
10	서울소방심리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제2항 소방전문치료센터 지정·운영할 수 있음. <p>※ 지역 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는 형태로 운영</p>	고위험군 맞춤형 1:1 사례관리, 정기적 전화상담 및 문자 서비스 제공, 온·오프라인을 통한 긴급심리위기지원, 찾아가는 상담진행 및 지원 프로그램 홍보·교육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소방청	유지
11	국방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18조(임무) 	사고우려자 및 복무부적응 장병 등에 대한 식별·관리, 현정위주 전문 심리상담 및 관리, 간부 및 상담병 대상 상담능력 향상 교육, 장병·군인가족에 대한 사회복지 관련 상담 등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국방부	유지
12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음주폐해예방관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3(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제2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 등) 	음주폐해예방 정책 지원, 음주폐해예방협의체 운영, 음주조장환경 모니터링, 음주예방사업 활성화 및 홍보, 절주교육 및 학교음주교육 등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보건복지부	유지
13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 ('하나원' 마음건강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전문상담사제도 운영), 제15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제30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남북하나재단(하나원) 설립 	심리검사, 평가 및 상담, 심리·정서안정프로그램 개발·운영, 심리·정서안정 분야 교재 및 강의안 개발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통일부	유지

14	서울시 정신질환자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정신질환자 자립 생활주택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건강복지법 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정신질환자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공모 및 선정	정신질환자 본인의 욕구 및 필요에 적합한 주거와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생활 지원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유지
15	경찰청 피해자심리전문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4조(피해자심 리전문요원), 제15조(피해자심리전문요원의 업무), 제 36조(심리적 지원 및 연계) 	강력범죄사건 등 초기현장출동 및 위기개입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안정 유도, 피해자 심적 외상(Trauma), 외상후 스트 레스장애(PTSD)등 피해예방, 피해자 지원방안모색 및 각종 정보제공 지원기관 연계 등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경찰청	유지
16	국가보훈처 심리재활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의3(심리 적 재활 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의2(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대상자 기본상담·심리검사, 고충건의사항 수렴, 심리재활 대상자 프로그램 운영개발· 지원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중증대상자에 대한 심리재활 집중센터 및 보훈병원 추천 연계,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지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국가 보훈처	유지
17	마약퇴치운동본부 산하 중독재활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한국마약퇴치운 동본부의 설립)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한국 마약 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 	마약류 사용자 조기발견 및 개입서비스, 마약류 사용자 관리사업, 마약류 사용자 가족지원사업, 지역사회연계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식약처	유지
18	간호대학에서 5년 이상 정신간호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간호사에 한정, 증명 서에 정신간호분야에 근무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요원 자격기준에 해당 	정신간호분야 업무	정신건강간호사	-	유지
19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재활 및 발달 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 시행규칙 제 16조(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의 지정), 제17조(행동발달 증진센터의 설치·운영) 	발달장애인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 의료지원, 자해·타해(공격) 등 행동 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 지원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보건복지부	유지

20	서울심리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센터의 설치) 	심리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심리평가, 내담자 선별 및 심리상담,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서울특별시	유지
21	교육부 교육청·교육지원청 지정 학생 자살예방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보건법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제16조의2(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p>※ 교육부, 지자체 교육청에서 위탁기관 공고 및 선정</p>	학생 자살예방 지원 및 상담서비스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교육부	유지
22	한국법무보호공단 (심리상담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갱생보호의 방법)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법무보호대상자 심리상담 심리검사 및 해석, 위험사례(중독, 정신질환 등) 관리, 법무보호대상자 가족상담 및 자녀 학업지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및 관련 분야 학술연구, 외부 상담 전문기관 연계 의뢰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법무부	유지
23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족상담지원서비스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업무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37조(사업)제2항제7호 	재가급여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 중 우울, 부양부담이 높은 가족을 대상으로, 개별 상담을 통한 심리·정서적 부양 부담감 해소, 집단활동 및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등 가족상담지원서비스 제공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보건복지부	유지
24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제1항 <p>※ 지역센터(위탁 13개, 직영 1개) 설치 및 민간상담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p>	생애주기별, 고위험군, 취약집단 대상 예방활동 및 홍보강화 도박문제 치유와 재활서비스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문화체육관광부	명칭 변경

25	보건복지부상담센터(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위기대응상담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4조(분야별 상담내용)제1항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상담, 정신건강상담 등 기타 위기 상담 관련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보건복지부	명칭 변경
26	중앙심리부검센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1조의2(심리부검)를 근거해 설립된 중앙심리부검센터는 동법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에 근거하여 설립된 중앙자살예방센터의 기능까지 통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으로 운영되고 있음. ※ 설립일('21.1.6.), 공식출범일('21.4.1.) 	자살예방체계 구축과 운영·지원, 자살예방 교육·홍보,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기획 및 평가, 자살고위험군 관리사업, 자살사후관리 지원 사업 등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보건복지부	명칭 변경
27	교육부 교육청·교육지원청 지정 대학병원 Wee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훈령」 제329호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학생 대상, 상담·교육·치료와 의료자문 및 전문의 병원 치료 지원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교육부	동일사업 이므로, Wee센터로 통합
	교육부 교육청·교육지원청 Wee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훈령」 제329호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 연계망을 활용하여 심리 평가-상담-치유를 위한 one-stop 서비스 제공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교육부	
28	학생 정신건강지원센터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관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건강복지법 제13조(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 학교보건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학교방문 지원 서비스 의뢰 및 연계체계 구축, 심층사정평가 및 면담(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자 사례회의 및 사례관리, 정신건강 고위험군 치료기관 연계 및 관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보건복지부 교육부	학생 정신건강 지원센터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관리사업 으로 통합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관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학교방문 지원 서비스 의뢰 및 연계체계 구축, 심층사정평가 및 면담(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자 사례회의 및 사례관리, 정신건강 고위험군 치료기관 연계 및 관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보건복지부 교육부	

	광주학생마음보듬센터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관리사업	※ 교육부에서 권역별 수행기관 공고 및 선정	학교방문상담(스쿨닥터), 내방상담, 대안교육 위탁 프로그램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광주광역시 교육청 민주시민 교육과 대한교육팀	
29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치매안심병원 지정 및 공립 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관리법 제20조(위임과 위탁) •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3조(위임과 위탁)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6(치매안심병원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 제외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도 개인신청으로 접수되었으며, 전문요원 운영 위원회 논의를 통해 경력인정기관으로 포함됨. 그러나 현재까지 해당기관 종사자의 승급신청 건은 없음. - 치매안심병원 지정과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및 관리 하는 행정기능 수행 - 또한, 해당업무수행을 위한 인력기준에 전문요원을 필수로 요하지 않음. 	치매안심병원 심사 및 지정, 사업 모니터링 및 관리, 공립요양병원 시설·장비 보강 및 설치	전문요원을 필수로 요하지 않음.	보건복지부	제외
30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지원팀	• 「아동복지법」 제24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 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피해아동가정의 사후관리, 아동학대 예방사업 등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교육부	'22년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경력인정 기관으로 포함
31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소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호관찰소의 설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 갱생 보호, 범죄예방활동 등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법무부	
32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직무) • 「보호소년 처우지침(법무부훈령)」 제16조의2(심신건강 증진소년) 	소년 수용·보호, 분류심사, 인성교육, 상담조사, 일반 중·고등학교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특별교육 등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법무부	

①-2 정신건강전문요원 유사과목 인정 사항

1. 목적

- 정신건강전문요원 유사과목 인정 사항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1(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기준)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인정과목)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기준의 인정과목과 유사과목이 동일교과목으로 인정 가능한지에 대한 심사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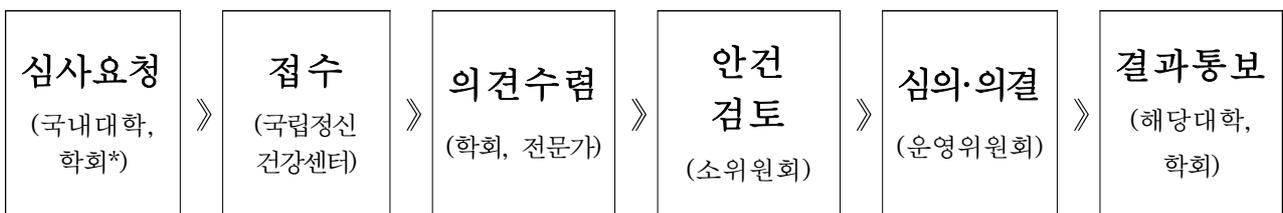
2. 적용범위(유사과목 인정 요건)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 또는 대학에서 이수한 임상심리관련 과목 인정에 대한 사항

3. 심사사항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9호 제4조제1항에서 규정된 “인정과목” (참고2)과 교과목의 내용이 동일할 경우 제14조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 심의 후, 동일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심사절차



- * (학회) 외국대학의 경우 한국임상심리학회를 통해 신청하며, 학회에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심사요청

다. 심사기준

- 1) 인정과목에서 요구하는 교과내용과의 유사 여부
- 2) 한국임상심리학회 등 전문가 검토의견 고려

라. 제출서류

- 1)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수련에 대한 유사과목 인정 심사요청 공문
- 2) 강의계획서(강의 세부내용 포함)
- 3) 기타 교과내용의 동일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참고2 인정과목

제4조(인정과목)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 또는 대학에서 이수한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대학원 임상심리관련 과목		대학 임상심리관련 과목	
필수(4과목)	정신병리학(혹은 고급이상심리학)	필수(4과목)	이상심리학
	심리평가(혹은 심리진단, 심리검사)		심리평가(또는 심리검사, 심리진단)
	심리치료(혹은 고급상담이론)		임상심리학
	연구방법론(혹은 고급 심리통계, 고급심리설계)		연구방법론(또는 심리통계, 심리설계)
선택 (25과목 중 3과목)	이상 상담 및 치료과목 중 택 1	선택 (20과목 중 6과목)	이상 상담 및 치료/평가 및 측정 과목중택1
	이상평가 및 측정과목 중 택 1		이상 기초과목 중 택 3
	이상기초 및 응용 과목 중 택 1		이상 응용 과목 중 택 2
	인지치료, 행동치료, 정신분석치료, 집단치료, 아동심리치료, 노인심리치료, 예술치료, 놀이치료, 가족치료, 게슈탈트치료		상담심리학, 집단상담, 가족상담, 아동상담, 특수아 상담, 신경심리평가, 아동심리평가, 심리측정이론
	(임상)신경심리평가, 아동심리평가, 투사검사, 고급측정이론, 다변량 분석		발달심리학, 생리심리학(또는 생물심리학), 신경심리학, 실험심리학, 학습심리학, 인지심리학, 언어심리학, 성격심리학, 사회심리학, 지각심리학, 동기 및 정서심리학
	재활심리학, 임상현장실습, 건강심리학, 발달정신병리학, 신경인지과학 고급발달심리학, 고급생리심리학, 고급학습심리학, 고급인지심리학, 고급성격심리학		건강심리학, 성심리학, 법정심리학, 행동의학, 재활심리학, 발달정신병리학, 임상현장실습, 스트레스와 적응, 노인심리학, 청년심리학